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동부지청(공시송달)공고 제2026-102호

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 공시송달 공고

고용보험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서를 2회에 걸쳐 등기 발송하였으나, 폐문 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. 11. 13.

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동부지청장

1. 건명: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 통지
2. 근거: 고용보험법 제40조 및 제58조제1호, 행정절차법 제14조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성명	생년월일	주소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 내용	송달불능 사유
안서○	79. 06. 11.	서울시 송파구 (이하 생략)	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	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여 수급자격 불인정	폐문 부재

4. 공고 기간: 2026. 11. 13.~2026. 11. 27.(15일간)
5. 기타 사항은 서울동부고용복지+센터 실업급여팀 박주향 주무관(☎ 02-2142-8419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